

보도일시	2021. 10. 14.(목) 조간 *인터넷 2021. 10. 13.(수) 12:00 이후 / 총 3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	과 장 정해영 사무관 이현주	044-202-7157 044-202-7156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

-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(3→1개월)
- 사업장 변경자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 근무 시 특례 인정
-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 교육 의무화

□ 10.14.(목)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,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.

-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·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,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(H-2)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.
- 이는 지난 4.13.에 공포된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,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10.14.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다.

### <1>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(3→1개월)

-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
-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.
-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동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다.

### <2>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

-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여
-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,
-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계속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.
-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(100인 미만 제조업, 서비스업, 농축산업, 어업)에서 4년 10개월간 근무\*하였다면
- \* 사업장 변경을 위한 구직활동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함
- 재입국 특례 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현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### <3> 외국인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특례 요건 보완

- 폭행, 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했다.
- 따라서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는 재입국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.
- \* 사례: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여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,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재입국 특례를 신청하지 못함
-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
-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 의견 등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입국 특례가

가능하도록 하였다.

\* 권익보호협의회: 지방관서, 사용자 단체, 노동자 단체, 외국인 단체 등이 참여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협의

#### <4>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교육 의무화

○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·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.

-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,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(PC 또는 모바일)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.

- 또한,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.



#### <5>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

○ 동포 외국인(H-2)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, 서비스업, 제조업, 농업, 어업 외에 광업\*이 추가된다.

\* 금속광업, 비금속광물 광업;연료용 제외, 광업 지원 서비스업

□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”임을 고려할 때

○ “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공백이 최소화되고,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 	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외국인력담당관실 이현주 사무관(☎ 044-202-7156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